

# 광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

의안 번호	4379
----------	------

2025. 12. 04.  
총무위원회

##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11. 10. 광양시장

나. 회부 일자: 2025. 11. 10. 회부

다. 상정 일자: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2025. 12. 04.) 상정,  
“원안의결”

## 2. 제안 요지

### 가. 제안 이유

- 별개의 조례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 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고 그 외 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나.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접종종류 및 지원대상(안 제2조~제3조)
- 예방접종의 실시기관 및 위탁(안 제4조)
- 예방접종의 신청 및 절차(안 제5조)
- 비용지원 및 환수(안 제6조~제7조)
- 피해보상 및 준용(안 제8조~제9조)

### 3. 검토 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선택예방접종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본칙 총 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칙에는 조례의 목적(안 제1조), 접종 종류 및 지원 대상(안 제2조~제3조), 예방접종의 실시기관 및 위탁(안 제4조), 예방접종의 신청 및 절차(안 제5), 비용 지원 및 환수(안 제6조~제7조), 피해 보상 및 준용((안 제8조~제9조)를, 부칙에는 이 조례 시행일을 규정하였음.
  
- 감염병 예방 및 사회적 건강증진 요구에 부응하며, 지역 특성에 맞춘 예방접종 정책 구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비교해 보았을 때, 내용이나 조문 체계, 형식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회의록 참조.

5. 심사 결과: 원안의결(출석위원 5명-박철수의원 회피)

6.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 없음.

붙임 광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정안)

### 광양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12조에 따라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종종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플루엔자 매년 1회
2. 대상포진 생백신 1회, 재조합 백신 2회
3. 백일해 1회(단, 임신부의 경우 임신 시마다 1회)
4. 그 밖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제3조(지원대상)** 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플루엔자: 접종일 현재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4세 이하 시민
2. 대상포진: 접종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
3. 백일해: 접종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배우자

나. 제1호의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2개월 이내 산모 및 배우자

4. 제2조제4호에 따른 예방접종: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기관 및 위탁)** ① 예방접종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가 실시하거나 시 소재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및 「광양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예방접종의 신청 및 절차)** 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신분증과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접종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② 접종기관은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출서류로 확인한다.

③ 접종 후 예방접종 사실을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한다.

**제6조(비용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의 전액 또

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되는 경우 비용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지원은 백신원가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예방접종 시행비용을 참고하여 시장이 정하여 지원한다.

**제7조(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한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만 시에 두고, 사실상 다른 시·군에서 거주하는 경우
3.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지 서식의 예방접종 비용 환수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보상)** ①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

침」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양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광양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